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외교부령 147호, 2025. 4.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직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6. ~ 3. 13.) 예정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5등급·6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사서사무관·기록연구관 또는 5등급·6등급 영사직·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로 하고,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로 하며, 같은 표 1~7 및 8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까지”를 각각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⑤ (생략)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업무의 총괄·조정</u> 6. (생략) ⑦ (생략)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기록연구 관 또는 5등급 · 6등급 영사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u>	<u><신 설></u>	<u>7</u>	+7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5 등 급 · 6 등 급 영사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u>	<u>7</u>	<u><삭 제></u>	-7
· ·	· ·	· ·	
<u>행 정 주 사 보 · 사 서 주 사 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u>	<u><신 설></u>	<u>21</u>	+21
<u>행정주사보 또는 3등급 · 4등급 영사직공무원</u>	<u>21</u>	<u><삭 제></u>	-21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사서주사 보 · 운전주사보</u> 또는 <u>3 등 급 · 4 등 급</u> <u>영사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u>	<u><신 설></u>	<u>6</u>	+6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 보</u> 또는 <u>3등급 · 4등급</u> <u>영사직 ·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u>	<u>6</u>	<u><삭 제></u>	-6
·	·	·	
·	·	·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3명 (9등급 1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5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5명, 7급 8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	6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3. 재외동포정책국 아주러시아동포과	7명 (8등급 1명, 7등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4. 교류협력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5. 교류협력국 재외동포협력총괄과	11명 (8등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6. 교류협력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7.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8.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2028년 3월 31일까지